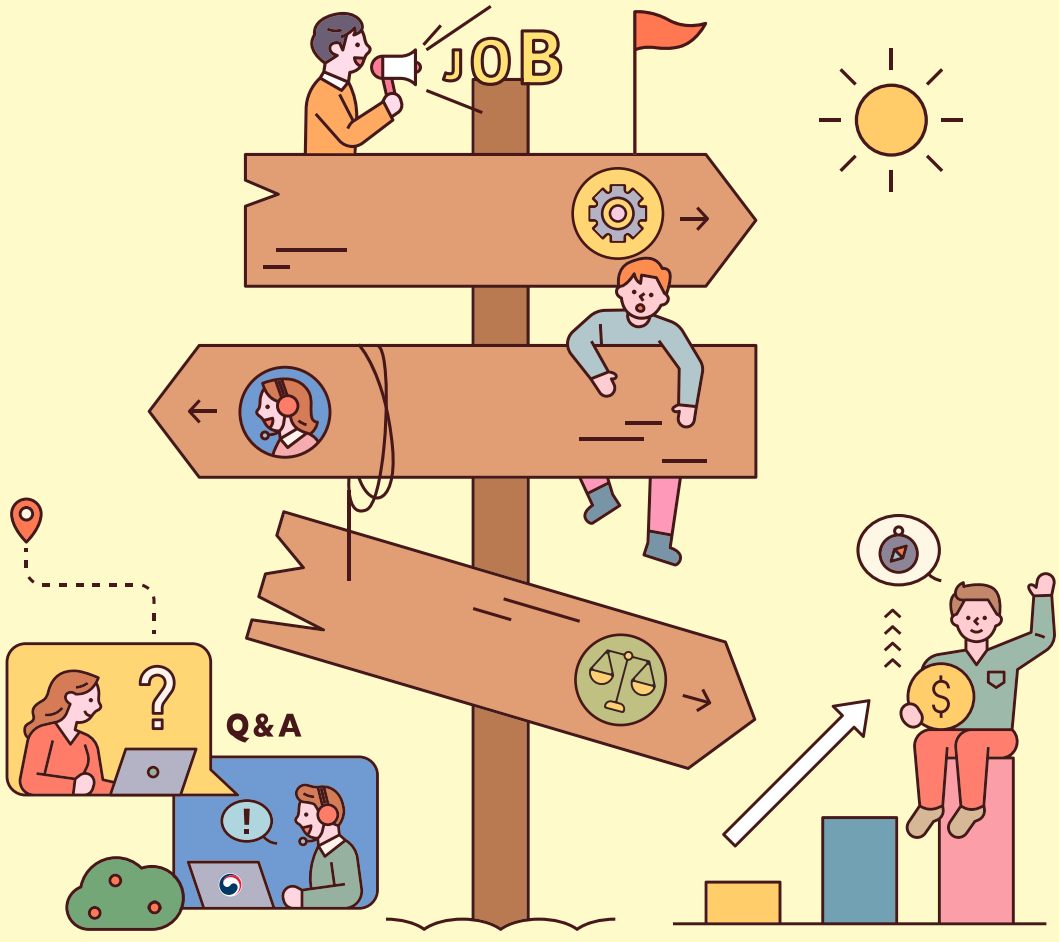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Visa Navigator 내비게이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비자 내비게이터 Visa Navigator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Ver 2022. 1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길잡이이며, **체류자격별 종류, 취업 가능 범위,
현 체류자격에서 어떤 자격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신청 방법, 주요 상담 사례, 각종 신고 의무사항**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PART 01 비자의 개요 04

PART 02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08

1. 유학, 연수 (D-2, D-4) 09
2. 주재, 투자, 경영 (D-7, D-8, D-9) 14
3. 구직 (D-10) 18
4. 취업(전문인력) (C-4, E-1~E-7) 23
5. 취업(비전문인력) (E-8~E-10) 26
6. 기타(문화예술, 취재, 종교) (D-1, D-5, D-6) 28
7. 방문동거, 동반(F-1, F-3) 31
8. 거주 (F-2) 32
9. 결혼이민 (F-6) 38
10. 영주 (F-5) 40

PART 03 알고나면 더 편리한 출입국 민원 42

Ⅰ. 민원 신청 방법

❶ 전자민원 이용 안내 43
❷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43
❸ 전자팩스(FAX) 이용 안내 44
❹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 (방문예약) 44
❺ 전자비자제도 안내 45

Ⅱ. 기타 온라인 서비스

❶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46
❷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 46

PART 04 자주 묻는 질문 47

PART 05 주요 상담 사례(외국인종합안내센터) 51

PART 06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55

❶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 56
❷ 주요 법 위반 사례 56

비자 내비게이터



비자의 개요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A계열 : 외교, 공무, 국가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 (외교)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재임기간
A-2 (공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공무수행기간
A-3 (협정)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신분존속기간

B계열 :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B-2 (관광·통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C계열 :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90일 이내 (연장 불가)
C-3 (단기방문)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C-4 (단기취업)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D계열 :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 교육을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3 (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해외 법인 생산직 근로자	2년 (연장 가능)
D-4 (일반연수)	대학부설 어학원, 사설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5 (취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6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등에서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7 (주재)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지점 등에 파견된 필수 인력	3년 (연장 가능)
D-8 (기업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의 필수전문인력 및 벤처기업·기술창업자	5년 (연장 가능)
D-9 (무역경영)	회사 설립 및 경영, 무역 또는 수입기계 등의 설치·산업설비 제작 등을 위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D-10 (구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는 사람	6개월 (첨단기술인턴:1년) (연장 가능)

E계열 :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등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 가능)
E-2 (회화)	외국어전문학원 등에서 회화지도에 근무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E-3 (연구)	자연과학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 분야의 연구원	5년 (연장 가능)
E-4 (기술지도)	산업상 특수한 분야 등에 속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람	5년 (연장 가능)
E-5 (전문직업)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년 (연장 가능)
E-6 (예술흥행)	수익을 목적으로 예술활동, 연예, 운동경기 등 활동을 하는 사람	2년 (연장 가능)
E-7 (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E-8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수확,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5개월 (연장 불가)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E-10 (선원취업)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항선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H-2 (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연장 가능)

F계열 :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 불가)
F-2 (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 불가)
F-4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F-5 (영주)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제한 없음)
F-6 (결혼)	국민과 혼인한 사람	3년 (취업제한 없음)

기타 :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 (관광취업)	관광취업(working holiday) 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협정상 기간 (연장 불가)

G-1 (기타)	산재·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1년 (연장 가능)

비자 내비게이터



PART 02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1. 유학·연수 (D-2, 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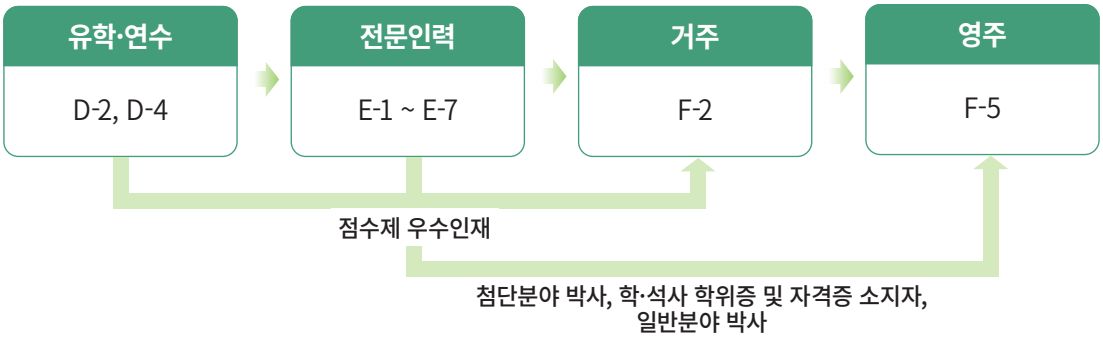
❶ 유학·연수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체류자격	세부 대상
D-2 (유학)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연구 과정 유학생 • 교환학생 • 일·학습연계과정 유학생 • 방문학생	D-4 (연수)	• 한국어 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외국인투자기업 등)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 한식조리연수생 • 사설기관 연수생 • 외국어 연수생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유형1 |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유학·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유학] 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첨단분야 박사,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유형2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유학·연수	구직
D-2, D-4	D-10

유형2 |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1단계 (유학·연수 → 구직)

- **(D-10, 일반구직)** ①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급 이상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준비 하려는 자로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 [구직 → 전문인력 → 거주 → 영주] 흐름도 바로가기

유형3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유학·연수	기술창업·무역경영	거주	영주
D-2, D-4	D-8, D-9	F-2	F-5

기술창업 투자자

유형3 |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유학·연수 → 기술창업·무역경영)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무역고유거래)**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 및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유학무역경영)** 국내 석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 경영

2단계 (기술창업·무역경영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8~D-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일반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기술창업]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❸ 취업 가능 범위

- **유학생의 영리,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간제 취업 또는 자격외활동 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시간제 취업**

 - **(대상자)** 어학연수(D-4)자격 및 방문학생(D-2)자격 변경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자, 유학(D-2) 체류자격자 중 일부

 - **(허용범위)**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

 *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 허용 :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인 경우 허가가 제한되나,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키즈카페, 영어캠프 등)에서의 시간제취업 제한

 - **(일·학습연계과정(D-2) 유학생 특례)** 대학 재학기간 중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 전문직종 분야 인턴활동 허용(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 **자격외활동**

 - 전문 분야(E-1 ~ E-7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함

❹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격(D-2)으로 체류 중인 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단, 체류기간 2년 이내인 일부 유학(D-2) 및 연수(D-4) 자격자는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제한

 ※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일반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용

-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체류경비 요건 입증하여야 함)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F-1, 미성년 유학생 부모)** 자비 부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에 한정하여 동반 부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유학생이 불법체류다발국가 출신일 경우 재정능력 갖춘 경우로 한정)

2. 주재, 투자, 경영 (D-7 ~ D-9)



❶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D-7 (주재)	•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하는 자 • 해외진출기업 근무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 주재하는 자
D-8 (기업투자)	•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자 •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 • 학사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기술창업자
D-9 (무역경영)	•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수출설비(기계)를 설치·운영·보수하는 자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하는 자 •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주재, 투자, 경영 자격에서 영주 자격 취득**

주재·투자·경영	거주	영주
D-7, D-8, D-9	F-2	F-5

유형1 | 주재, 투자, 경영 자격에서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주재, 투자, 경영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7~D-9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유형2 고액투자자의 영주 자격 취득

투자	→	거주	→	영주
D-8		F-2		F-5

유형2 | 고액투자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투자 → 거주)

- **(F-2, 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 ①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 또는 ②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③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고액 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 고용

* **고액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유형3 기술창업자의 영주 자격 취득

투자	영주
D-8	F-5

유형3 | 기술창업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투자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❸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D-7(주재)~D-9(무역경영) 자격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D-7(주재)~D-9(무역경영)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GNI 이상으로 완화)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3. 구직 (D-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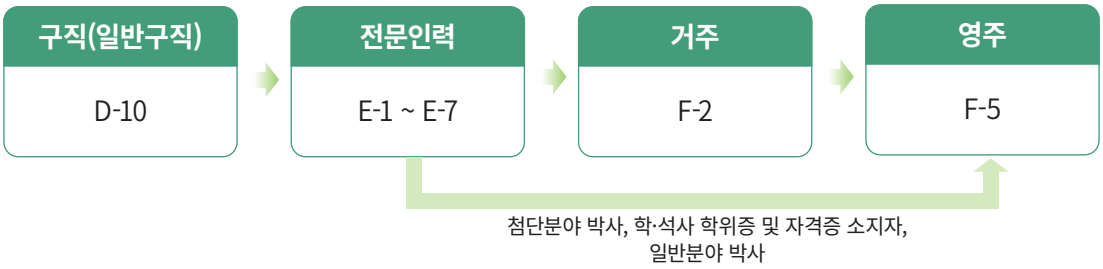
❶ 구직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D-10 **(구직)**	· 일반구직자 (국내 기업·단체 구직활동, 단기 인턴 과정 등) ·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 첨단기술인턴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구직자(일반구직)가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유형1 | 구직자(일반구직)가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구직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첨단분야 박사,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전문인력]에서 [영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유형2 기술창업 준비자가 기술창업 후 영주 자격 취득

구직(기술창업 준비자)	기술창업	영주
D-10	D-8	F-5

유형2 | 기술창업 준비자가 기술창업 후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구직 → 기술창업)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2단계 (기술창업 → 영주)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유형3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가 첨단기술인턴 후 취업 또는 창업 시 체류지원 특례

해외 우수 대학	구직(첨단기술인턴)	전문인력	기술창업
첨단기술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생	D-10	E-7	D-8

유형3 |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가 인턴 후 취업 또는 창업

1단계 (해외 우수 대학 재학생, 졸업생 → 첨단기술인턴)

- **(D-10, 첨단기술인턴)** 해외 우수 대학*(본교)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 기술 분야 인턴 예정

 *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산업부 고시 제2022-36호에서 정한 분야

2단계 (첨단기술인턴 → 전문인력 or 기술창업)

- **(E-7, 전문인력)** 직종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 첨단기술인턴(D-10)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첨단기술인턴(D-10)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로, 인턴 활동 분야 기술창업 희망 시 **기술창업(D-8) 점수제 가점 부여**

❸ 취업 가능 범위

- **연수활동(인턴활동)**

 - **(대상자)** 일반구직(D-10)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 기간 중에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기술창업(D-10) 자격 소지자 및 전문직종(E-1~7) 취업 경력자로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인턴활동 원칙적 불가

 - **(허용기간)** 구직자격(D-10) 소지자 기간 동안 최대 1년 범위 이내(단, 동일 기업에서 최대 6개월까지 허용)

- **첨단기술분야 인턴**

 - **(대상자)** 첨단기술인턴(D-10) 자격 소지자

 - **(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 **시간제 취업**

 - **(대상자)** 유학(D-2)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과태료 처분 제외)

 - **(허용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❹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점수제 구직(D-10) 자격의 경우 주 자격자의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점수제 면제 특례자도 구직 점수 요건 충족 시에만 동반 비자로 초청 가능)

4. 취업(전문인력) (C-4, E-1 ~ E-7)



❶ 취업(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체류자격	세부 대상
C-4 (단기취업)	• 계절근로 단기취업 • 그 외 단기취업 (일시흥행, 강의, 연구 등)	**E-4 (기술지도)**	•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 제공하는 자
E-1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E-5 (전문직업)**	•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자
E-2 (회화지도)	•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 정부초청 보조교사	**E-6 (예술흥행)**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하는 자 •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3 (연구)	•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의 연구원	**E-7 (특정활동)**	•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일반기능인력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취업한 사람(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전문인력	거주	영주
E-1 ~ E-7	F-2	F-5

유형1 | 취업한 사람(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 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❸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E-1(교수)~E-7(특정활동) 자격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F-1,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E-1(교수)~E-7(특정활동)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GNI 이상으로 완화)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5. 취업(비전문인력) (E-8 ~ E-10)



❶ 취업(비전문인력)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E-8 (계절근로)	• 농작물 재배, 수확, 수산물 원시 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E-9 (비전문취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종사자
E-10 (선원취업)	• 내항선원, 어선원, 순항여객선 취업선원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취업한 사람(비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비전문인력	특정활동	거주	영주
E-9, E-10	E-7 (숙련기능인력)	F-2	F-5

유형1 | 취업한 사람(비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비전문인력 → 숙련기능인력)

- **(E-7, 숙련기능인력)** E-9, E-10 자격 소지자로 최근 10년간 5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취업 활동을 하고 점수제 등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2단계 (숙련기능인력 → 거주)

- **(F-2, 장기체류자)** E-7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❸ 유의사항

- E-9, E-10 자격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E-7 자격으로의 변경이 제한되나,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자격으로의 전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❹ 동반 가족 초청

-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장기 비자로 초청 불가

6. 기타(문화예술, 취재, 종교) (D-1, D-5, D-6)



❶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D-1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
D-5 (취재)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D-6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문화예술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문화예술	거주	영주
D-1	F-2	F-5

유형1 | 문화예술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문화예술 → 거주)

- **(F-2, 장기체류자)** D-1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유형2 취재, 종교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취재, 종교	거주	영주
D-5, D-6	F-2	F-5

유형2 | 취재, 종교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취재, 종교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5, D-6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❸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D-1(문화예술), D-5(취재), D-6(종교) 자격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7. 방문동거, 동반(F-1, F-3)



❶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F-1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주한 외국공관 등에 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 국적신청자 • 거주(F-2) 자격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 부모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주한외국공관, 고액투자자, 첨단투자자, 전문인력 등의 가사보조인 •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 기타
F-3 (동반)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단, D-3 제외)

❷ 취업 가능 범위

-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 **(예외)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의 취업 가능**

8. 거주(F-2)



❶ 거주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F-2 (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 점수제 우수인재 및 동반 가족 • 부동산 투자이민자 및 동반 가족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및 동반 가족 • 은퇴이민 투자자 및 동반 가족 • 특별기여자 • 기타 장기체류자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거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거주	영주
F-2	F-5

유형1 | 거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유형2 **고액 투자자의 영주 자격 취득**

거주	→	영주
F-2		F-5

유형2 | 고액투자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고액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 고용

* **고액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유형3 투자이민자의 영주 자격 취득

거주	영주
F-2	F-5

유형3 | 투자이민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 **(F-5,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투자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F-5,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은퇴이민 투자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 **부동산 투자자,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❸ 점수제 우수인재(F-2-7)

- **자격 요건**

- 다음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수를 충족하고 품행단정, 취업활동, 공중보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 분	신청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KOSPI 또는 KOSDAQ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종사자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분야 종사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GNI 1.5배 이상
전문직 종사자	취재(D-5)~무역(D-9), 교수(E-1)~전문인력(E-7-1)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제외**
유학인재	국내 석사 이상 참전국 학사 우수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석박사 취득(예정)자

❹ 장기체류자(F-2-99)

-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 유지 능력 요건, 기본 소양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

 - 신청 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 3),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❺ 투자이민제도

- **투자이민제도란?**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과 동반 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투자 대상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자,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은퇴이민 투자자**로 구분

- **유형별 기준금액**

부동산투자이민	투자 대상 체류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 임원, 주주 * 등기 완료자, 콘도 등 회원,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공익사업투자이민	**5억원** 이상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 **체류자격변경 절차**

유형1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유형2 부동산 투자이민자



❻ 동반 가족 초청

● **점수제 우수인재**

- 주 체류자(F-2)가 소득 기준(GNI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거주(F-2) 자격으로 초청 가능하며, 미충족하는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 단, 잠재적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의 경우 주체류자(F-2-7S)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주체류자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거주(F-2) 자격으로 변경

● **부동산 투자이민자**

- 투자자 본인의 거주(F-2) 자격 취득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거주(F-2)자격으로 주 자격자 체류기간 범위 내 허용

● **공익사업 투자이민자**

- 투자자 본인의 거주(F-2) 자격 취득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거주(F-2) 자격으로 주 자격자 체류기간 범위 내 허용

●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 주 체류자(F-2)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거주(F-2) 자격으로 초청 가능하며, 미충족하는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 **특정 체류자격에서 F-2(거주)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가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거주 체류자격(F-2)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GNI 이상으로 완화)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그 외 F-2 비자**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9. 결혼이민(F-6)



❶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F-6 (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자녀 양육자 • 혼인 단절자

❷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아래의 내용은 신청 가능 대상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 체류자격별 세부요건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형1 결혼이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결혼이민	영주
F-6	F-5

유형1 | 결혼이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1단계 (결혼이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국민의 배우자)** F-6(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자)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

* **국민의 배우자(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❸ 취업 활동 범위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단, 사행산업 종사 등은 관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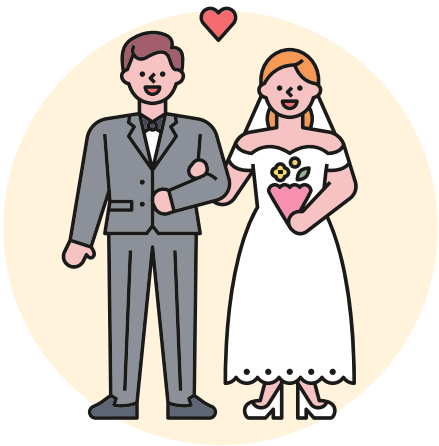
❹ 유의사항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와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혼인단절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F-1(혼인단절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변경 가능**

❺ 동반 가족 초청

- **(F-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적,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등 가족을 F-1(방문동거) 자격으로 초청 가능



10. 영주(F-5)



❶ 영주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F-5 (영주)	•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대한민국 체류)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액 투자자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첨단분야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특별 공로자 • 연금 수혜자 • 방문취업자격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일반분야 박사 • 점수제 영주자 • 부동산 투자자 • 점수제 영주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부동산 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기술창업 투자자 • 조건부 고액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 난민 인정자

❷ 취업 활동 범위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❸ 유의사항

- **'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시행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 개시 및 영주자격(F-5) 보유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되어 기간 내 영주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 면제**

❹ 동반 가족 초청

-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 초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F-2) 자격으로 초청 가능**

- **특정 체류자격에서 F-5(영주)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가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영주 체류자격(F-5)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해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GNI 이상으로 완화)

 ※ 해당 자격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비자 내비게이터



PART 03

알고나면 더 편리한 출입국 민원

Ⅰ. 민원 신청 방법



❶ 전자민원 이용 안내

- **아래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신청 가능 (전자민원 이용 시 법정수수료의 20% 할인 혜택 제공)**

전자민원 대상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 : 모든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 일부(D-3, D-8, E-7, F-2, F-6, G-1, F-1)를 제외하고 모든 체류자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 **재입국허가**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체류자격변경허가 [D-2, F-4(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 **근무처변경허가 (E-9)**
- **시간제취업허가 (D-2, D-4)**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 E-1~E-10, H-2)**
- **취업개시신고 (H-2)**

❷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 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조회 가능**

주의사항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❸ 전자팩스(FAX) 이용 안내

- **전자팩스를 통해 각종 신고 업무 가능 (FAX:1577-1346)**
 ※ 전국 단일번호(1577-1346) 사용, 신고 가능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

이용 가능 사무

- **고용변동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중 아래 항목**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의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변경 포함)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 인턴신고

주의사항

- 반드시 법무부 회신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문은 신고서 등이 처리기관에 착신되었음을 알려드릴 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팩스신고 후 반려되어 사무소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❹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 (방문예약)

-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필요**

❺ 전자비자제도 안내

- **전자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비자 신청 가능**

발급대상

- **장기체류비자 (90일 초과 체류 가능)**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KOTRA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E-7
 -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 유학생(D-2-3, D-2-4)
 -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G-1-10)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 **단기체류비자 (90일 이내 체류 가능)**
 -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현재 중국 및 동남아 3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시행중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C-3-3)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기업에서 초청하여 상용목적으로 빈번 출입국하는 사람(C-3-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C-4-5)

II. 기타 온라인 서비스



❶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적 선택 사실증명
- 국적 취득 사실증명
- 국적 보유 신고 사실증명
- 국적 이탈 사실증명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❷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

조회 가능한 업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체류만료일조회
-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한국인 전용)

비자 내비게이터



PART 04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무소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민원신청-전자민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만료 당일(전자민원의 경우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민원 신청 시 꼭 방문 예약을 해야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및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도 있습니다.

* 예외 대상자 : 임산부(배우자 포함),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여성, 영아(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장애 1~3등급),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공통서류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 군,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신청하여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사람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격을 소지하였더라도 이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취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각종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침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여권 변경 신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 중인데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이 가능한가요?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이수할 경우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제의 경우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며, 이수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단계의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법, 질서를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구제 절차와 각종 생활 편의 정보를 총 18가지 언어로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 시, 2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 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불어, 네팔어, 벵골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라오어, 미얀마어



해외에서 비자(사증)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외공관에 꼭 방문해야하나요?



전자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확인하기

PART
05



주요 상담 사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❶ 체류지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소신고자(F-4)는 거소지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체류지의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변경(거소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가능)
2.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❷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 여권을 받았습니다. 여권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권 변경 시 방문/민원대행/전자민원/팩스 중 신고방식을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도과된 경우 방문 신고(사범심사 필요)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신여권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 원칙 (단, 신고기한인 45일을 도과하였으나 공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여권 수령일이 확인되는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신고의무기간(15일) 계산)

* 구비서류: 통합신청서, 신여권, 구여권, 외국인등록증, 수령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❸ E-3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출국 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가 '22.4.1부로 재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단, 입국금지자, 사증발급규제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❹ 현재 E-7으로 체류 중입니다. F-2-7으로 변경하려면 3년 이상 합법체류 중이어야 한다는데, 혹시 이전 체류자격인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도 합산이 되나요?



문의하신 내용이 '전문직 종사자' 유형의 F-2-7 체류자격 변경인 경우라면, D-2와 D-10으로 체류한 기간은 합산 되지 않습니다. (E-1~E-7-1 또는 D-5~D-9으로 국내 체류한 기간만 합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을 받은 경우

❺ 저는 D-2 체류자격으로 3년 체류했고, 현재는 E-7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F-5-1 체류자격 변경 신청 기본조건이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인데 D-2 체류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D-2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F-5-1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출국 없이 위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❻ F-5-10으로 신청 시 가족 소득 합산이 가능한가요?



F-5-10 신청 대상은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소득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❼ D-2 유학생도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한가요?



본인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글 성명 병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재한화교 :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호적등본에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② 중국동포 :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장부(상주인구등록표) 또는 신분증(공민신분증)의 민족란에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되어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③ 과거 한국국적 국적보유 외국국적 동포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에서 한글성명이 확인되는 사람

❽ 저는 D-2로 석사 과정 중입니다. 부모님을 장기체류 비자로 초청 가능한가요?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로 충분한 재정 능력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반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부모님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❾ 부동산 투자자 요건으로 F-5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한가요?



부동산 투자자 영주 자격의 경우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 자격으로 총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5년 이상'은 투자기간을 뜻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출국하여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 동일한 F-2 자격을 재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이 때에는 완전출국까지의 투자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합니다.



PART 06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 사례

❶ 각종 신고 등 의무사항

-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 **체류지변경 신고 (15일 이내, F-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 **등록사항변경 신고 (15일 이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 방문취업(H-2)의 취업개시 및 변경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신고)
-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자격변경**
-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
- **고용변동신고 (15일 이내)**

❷ 주요 법 위반 사례

- **외국인등록 의무**

핵심내용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례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위반 ▪ 처분내용 범칙금 최대 1,000만원

- **체류지변경 신고**

핵심내용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사례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이사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는 따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위반 ▪ 처분내용 범칙금 최대 100만원

● 등록사항변경 신고

핵심내용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
위반사례	등록외국인이 국내의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 ▪ 처분내용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자격부여 또는 출국

핵심내용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위반사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으나 90일 이내 자녀의 외국인등록 및 자격부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 ▪ 처분내용 과태료 최대 100만원 (신청의무자에게 처분)

● 고용변동신고 미필

핵심내용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위반사례	외국인을 고용한 A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위반 ▪ 처분내용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핵심내용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사례	외국인 유학생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 ▪ 처분내용 범칙금 최대 3,000만원

● 근무처변경·추가 허가, 신고

핵심내용	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신고 대상인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위반사례	회화지도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채로 근무하는 학원을 변경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위반 ▪ 처분내용 허가 대상의 경우 범칙금 최대 1000만원, 신고 대상의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제한

핵심내용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사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입국 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결과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94조제2호 ▪ 처분내용 범칙금 최대 3,000만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